

# 협 조 문

존경하는 대한의사협회장님 귀하

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저는 국군의무사령관으로서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군 병원과 야전 의무부대  
군의원들의 민간병원에서의 불법 진료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사활동과  
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만, 보다 근본적인 대처를 위해  
귀 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협회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, **군의원 신분으로 민간병원 진  
료행위를 할 경우 “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  
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”는 <군인복무규율 제16조 영리행위  
및 겸직 금지>조항에 위배되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의료사고 발생시  
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.**

뿐만 아니라, 불법 진료 군의관에 대해서는 군법을 적용하여 엄중 처벌  
하는 것은 물론, 언론에 보도될 경우 국민들의 커다란 불신을 초래하여 군  
의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의무병과 전체에 대한 신뢰를  
저버리게 되는 등 부정적 파급효과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.

따라서, 불법 의료행위에 따른 부담 경감과 함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 
있는 후배들을 보호하며, 군 의료 발전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군의관들의  
민간병원 불법진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협조 및 제도해 주시  
기를 당부 드립니다.

다시 한 번 군 의료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 
의사협회장님께 감사드리며, 귀 협회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합니다.

2011. 11. 30

국군의무사령관 육군 소장 남택서 배상  
남택서